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현재 368개 단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아청법상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으로 인해 보호관찰처분 등 사실상 소년법상 형사 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전국 368개 단체(2019년 4월 현재)로 구성되었습니다.

2.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는 2013년 1월부터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2017년 2월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8년 2월 해당 상임위원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2018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위원장 김도읍)에 회부된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었음을 지적, 그 논의의 중심에서 있는 법무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1월 28일 법무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 인권국, 형사법제과, 보호법제과에 법무부장관 면담 요청서, 아청법 개정 촉구 대국민서명, 관련 자료 등도 전달하였습니다.

3.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 16일, 2019년 2월 22일에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면담과 관련한 회신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과의 즉각적인 면담 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별첨: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및

2019년 1월 28일 법무부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법무부 장관
(경유) 담당자
제목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의 건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19년 1월 22일(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업화된 성착취 범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현행 '아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에 뜻을 같이하는 한국사회 시민·사회·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관련하여 아청법 개정 공대위 취지를 첨부합니다.

3. '아청법' 개정 공대위는 현행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의 1년동안이나 계류되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법무부의 '사실상' 반대의견 때문이라는 점에서 '아청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절박함에 대해 법무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장관님과 면담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붙임 : 아청법 개정 공대위 취지문 1부 <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발 신 일 2019. 1. 16. 담당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연락처(010-

대표전화: (02)6348-1318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10up.or.kr>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장관비서실

(참조)

제 목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건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는 상업화된 성착취 범죄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공감한 전국 365개 단체와 함께 구성된 단체입니다.

3. 공대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법무부의 국/과마다 상이한 입장 때문이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 청취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전달하고자 지난 1월 16일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4. 이에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 면담 요청 이후 면담 추진 경과 문의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재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5. 관련하여 오는 2월 28일 (목) 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체: (사)탁틴내일, 십대여성인권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위기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 서울시성매매피해지원시설협의회,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답 당 (사) 탁틴내일 대표 (연락처: 010-)

협 조 자

접 수

시 행 일 2019년 2월 22일

우편번호 03786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www.tacteen.net

전 화 02-338-7480

전 송 02-3141-9339

e-mail tacteen41@hanmail.net

/공개

보 도 자 료		
보도날짜	2018. 01. 28. (월)	28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말로는 보호대상, 사실은 처벌대상!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죄자 취급말라!”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8일 (월) 11시 / 정부과천청사 정문(법무부)		

구 분	기자회견 취재,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 아동 담당
발 신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 사단법인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 지원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위기 청소년교육센터, 탁틴내일
담 당 자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십대여성인권센터 www.10up.or.kr / 02) 6348-1318 / [redacted] 서울시 영등포구 [redacted] 대표 조진경, 사무국장 권주리 홍보TFT: 다시함께상담센터, 탁틴내일, 여성인권센터 살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아청법상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으로 인해 보호관찰처분 등 사실상 소년법 상 형사 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전국 364개 단체(2019.01.22.기준) 구성되었으며 40여명이 모여 1월 28일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 날 기자회견은 변정희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힘찬 구호로 시작했다. 2013년 1월부터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2017년 2월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8년 2월 해당 상임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2018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위원장 김도읍)에 회부된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었음을 지적, 그 논의의 중심에서 있는 법무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했다.

□ 이어서 진행된 참여단체 연대발언에서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성매매당한 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보지 않고 아동·청소년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 보호처분을 가능하게 하면 아동·청소년들은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렵고 범죄자들도 아동·청소년의 책임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략)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조속히 법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의 찬성의 뜻을 밝히고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권주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역시, 국가가 더 이상 아청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더 이상 아청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하고, 법무부는 정부로서 보호의 의무를 다하고 아동·청소년의 피해 경험을 범죄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매매근절을위한소리회 부설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심아라 팀장은, 성매매는 알선자와 구매자들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옴아매어 누구에게도 도움 받을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폭력이며, 착취, 갈취, 폭행, 협박, 낙인, 강간, 살인 등의 피해에 놓여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남은주 대표는 실질적인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아청법 개정 이후의 지원체계와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장단기적 성착취 아동·청소년 피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다시함께상담센터 [] 소장,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현재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을 물으며,

▲ 법무부에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인정, ‘아청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아청법’ 개정예 앞장설 것

▲ 법무부에 공대위가 요구한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

▲ 국회와 정부에 오는 2월 임시국회 ‘아청법’ 개정안 안전상정 및 통과,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할 것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적극적 수립 및 시행을 요구했다.

※ 붙임1. 사진자료

※ 붙임2. 기자회견문

※ 붙임3. 참여단체 연대발언문

사진 자료



사진 1) 1월 28일 (수)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
(과천정부청사-법무부 정문)



사진 2) 1월 28일 (수) 진행된 기자회견 퍼포먼스
- 대상청소년의 낙인



사진 3) 1월 28일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
(과천정부청사-법무부 정문 앞)



사진 4) 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에 전달된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서, 아청법 개정 촉구 대국민서명, 관련 자료 등 전달

기자회견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문

말로는 보호대상, 사실은 처벌대상!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죄자 취급말라!!

지난 1월 22일(화), 364개의 범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아청법'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범죄자로 모는 현실을 알게 된 더 많은 시민들이 점점 더 분노하고 있다. 공대위는 시민들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 그 첫 번째로 그간 '아청법' 개정 제동을 걸어 온 법무부에 책임을 묻고 규탄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가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나, 그 어떤 피해자로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범람하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착취하는 방법과 수단은 더욱 더 교묘해져가고, 한국 남성들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다. 현행 '아청법'은 이를 방지하기에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하는 등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성매수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착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쉽게 악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도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아청법' 개정을 국회에 권고하였다. 헌법재판소 또한 현행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윤락여성'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규율의 주안점을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기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1헌가1 결정) 결국 현행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은 '아청법'의 본래 입법취지에도 전면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2018년 1월에는 아청법 개정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http://segye.com/newsView/20180126001438>)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법무부 장관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아청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은 인격이 미성숙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비범죄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왜 범죄의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묻고 있는가? 심지어 이는 사실조차 아니다. ‘아청법’ 제38조 ①항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율하고 있어 ‘아청법’에서도 본래 비범죄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심지어 아동청소년에게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성매매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형법체계가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에 노출된 책임을 전가하는가? 또한 어떤 나라가 아동청소년을 성인과 똑같은 책임을 지우는가?

또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처벌이 아니라 보호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매매에 이용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가 내놓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변명일 뿐이다. 절도 가해자나 성매매 알선 강요한 포주들과 똑같이 보호처분 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처벌이 아닐 수 있는가?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길 주저하고, 결과적으로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지속적인 성매매를 강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법무부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주체인 법무부가 오히려 법 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국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처벌하는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의 책임은 성매수자와 알선업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교육과 보호처분은 범람하는 성착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사법적 횡포다.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성착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자이자 범죄자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일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도 부재하고 보호목적도 상실한 법무부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법 집행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며,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법무부 장관이 개정 의지 표명까지 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할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아청법’ 개정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 대한민국 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다. 법무부가 보호해야 할 것은 ‘아청법’이 아니라 이 땅의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다.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국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제대로 수립할 때까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에 반대하는 우리 범여성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이름으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벌되는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성을 사는 구매자와 알선자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상업적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아청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아청법' 개정예 앞장서라!
2. 법무부는 지난 1월 16일자 공대위가 요구한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즉각 추진하라!
3. 국회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에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4. 국회와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라!
5. 국회와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유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라!

2019년 1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체: 사단법인한국여성변호사회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서울시성매매피해 여성지원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총 364개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씨튼해바라기의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 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여성성공센터 W-ing,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Na-Mu,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어깨동무, 새움터, (사) 인권희망'강강술래', (사)여성인권 티움, (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 여성인권지

원센터‘살림’, (사)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목포여성인권 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 상담소)

사)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밥풀러서 협동조합, 성매매피해 상담소 “With Us”,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사) 나누리회부설 헤아림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우리들침자리, 유프라시아의집, 씨튼해바라기의집, 평화의샘, 희망터, 나루, 안뜨레봄, 구세군정다운집, 우리청소년침자리, 여신, 수지의집, 소망의집, 누리봄, 씨밀레, 동글레청소년지원시설, 구세군샬리흙, 신나는디딤터, 살림쉼터, 부산여성의집, 해뜨는집, 헤아림, 로댐의집, 경남범숙의집, 해바라기침자리)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부설 희희낙락 상담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상담소,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티움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 (사)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여성인권상담소 소나의 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쉬고,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성매매피해상담소 새날, 강원여성인권지원센터 공동체 춘천길잡이의 집,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한부모지원센터,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상담소, (사)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꿈아리,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쉼터, (사)부산구세군샬리흙, (사)부산여성의집, (사)부산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사)부산해뜨는 집,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숲), (사)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산여성회 부설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중부산 가정폭력상담소, (사)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부산새길공동체 누림터, (사)부산새길공동체 해봄터, (재)평화여성의집,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집, (사)부산새길공동체 양지터, (사)부산로사리오카리타스 초원의 집)

(사)들꽃청소년세상(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자립팜 “이상한나라앨리스”, 한신쉼터, 새발토끼풀가정, 야간새벽이슬가정, 인애해바라기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그린텍장미가정, 아모텍진달래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엘이디코스모스가정, 한신예수가정, 들꽃피는학교, 아담스지역아동센터, 관악교육복지센터, 들꽃청소년연구소, 전북청소년자치연구소“달그락달그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벨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

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익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덴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비평,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덴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

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광진청소년문화센터, 동작청소년문화센터, 드림청소년문화센터, 송파청소년문화센터, 아하청소년문화센터, 중랑청소년문화센터, 창동청소년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시소·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1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2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서울시립용산청소년일시킴터, 춘천길잡이의 집, 장애인권법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사)두루,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대구여성회, 세이브더칠드런,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단체 연대발언문

법무부는 '대상 청소년' 이라는 이름으로 성착취 범죄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기는 커녕 처벌 가능하게 만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법 개정예 적극 나서야 합니다.

탁틴내일 상임대표

지난해 2월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성 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현행법으로 인해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의 지위로 피의자로 조사받고 보호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고 범죄 피해자로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지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지 11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이유 중에는 법무부가 법 개정예 대한 정확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은 법 개정예 반대하는 것도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의 입장이 정리 되지 않으면 법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청법 개정예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법무부는 이렇다할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 상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은 물 건너 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논의를 시작하고 법을 통과하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의 피해는 이어질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 폭력 피해나 외로움, 경제적인 궁핍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범죄자의 요구에, 혹은 그루밍 수법에 속아 성적 인 행동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과연 아동의 인권의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려 접근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사실이 바로 드러나고 즉시,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받도록 법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도 범죄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거나 처벌을 어렵게 한다면 법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당한 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보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 보호처분을 가능하게 하면 처벌이 두려운 아이들은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고 범죄자들도 아이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면 범죄자들은 법망을 쉽게 피하면서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계속 범죄 대상을 물색할 것이고 청소년들은 계속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조속히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예 대한 찬성의 뜻을 밝히고 법 개정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권주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매수와 성폭력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합니다.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되어 피해 청소년을 범죄 가담자로 보아 선도 대상으로 보는 모순이 있습니다.

또한, 성매수에 이용된 아이들의 재판에 동석해 보면 재판부는 범죄자인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초범이거나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의 감형을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어른의 사연은 청취하고 죄를 묻지 않기도 하지만, 피해아동청소년들은 범죄에 가담한 아이들로 판단하고, 재범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물어 보호처분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한 아청법 통합 개정안은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면 성매매하는 아이들이 계속 성매매를 할 것인데, 이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게 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비자발의 구분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대상의 구분이며, 보호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피해자와 범죄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묻습니다. 자발/비자발 여부로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나누는 법무부 입장으로 본다면, 해마다 대상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율과 법무부가 고수하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아이들에게 처벌로 여겨져 피해 경험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하고, 알선자나 구매자에게 '너도 처벌받는다' 라고 악용되어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성인 피해자도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사실상 처벌 조항이 있는 아청법에서 처벌을 감수하고 도움을 요청할 아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피해는 점점 확산되고, 피해 경험연령은 점점 저연령화 되는 결과만 초래하는데, 아청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아동청소년기에 성매수에 이용된 아이들이 성인기까지 성매수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처벌이 두려워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환경으로부터 숨지 않게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성매수에 이용되는 고리를 끊어주어야 성인기까지 성매매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고, 성매매 예방에 투자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매수에 이용되는 주요 통로인 채팅 어플 등 사이버 공간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아이들의 성을 사겠다, 교복을 입으면 더 좋다는 게시글들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이 나라에서 버젓이 성을 사겠다는, 심지어 아이들의 성을 사겠다는 글을 쓰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사회,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어른들이 일으키는 성범죄일 뿐입니다. 어른들이 만든 환경에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이용되는 아이들의 오늘을 어른들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잘못을 저지른 어른들을 적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아청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청소년을 방관하지 말malıdır. 더 이상 아청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법무부는 정부로서 보호의 의무를 다하고 아이들의 피해 경험을 범죄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매수의 상대가 되는 아동·청소년은 이유 불문하고 명백한 성착취 피해자입니다.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자를 위해 독소 조항인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반드시 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부설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쾌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하는 동안 끊임없이 폭력과 부당한 피해를 당해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성매매를 직접 겪었기에 말하고 싶습니다. 성매매는 스스로를 가축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폭력에 길들여지고, 성구매자와 알선자의 유혹과 그들의 말에 길들여져 성매매라는 우리에게 갇혀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도 나갈 수 없는 그야말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재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에게 반성의 강요로 처벌하듯 행해지는 보호, 성구매자와 알선자들로부터 듣는 “성매매에서 빠져나와도 사람들은 너를 욕하고, 더러운 몸보듯 할거야, 너는 처벌받아” 등의 헐박.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빠지게 되는 이유, 성매매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성매매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폭력에 길들여지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망치게 하고, 감정에 무너지게 만들어 사람으로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성매매라는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성매매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치고, 피해를 입히는지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알려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 행위, 성폭력 행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되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적 시각으로 법적체계를 갖추어서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을 실제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열악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악용하는 그루밍수법이용자, 성매수자, 알선자, 랜덤채팅 앱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 행위 처벌에 준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제적인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문구를 삭제하고, 산발적/표면적 지원체계가 아닌 다각적/체계적/지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갖출 것으로 요구합니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은 말합니다. 성매매는 알선자와 구매자들을 통해 자신을 유포하여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폭력이며, 착취, 갈취, 폭행, 헐박, 낙인, 강간, 살인 등의 피해에 놓여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피해 사실을 세상이 제대로 알려주기를 희망합니다. 성매매라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성착취 피해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성착취 피해청소년의 요청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아동법을 개정하고
착취 아동·청소년피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위기청소년 교육센터 대표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든든한 연대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월22일 아동법개정공대위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는 지금까지 '보호' 하는 미명아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의거 실질적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이 처벌 조항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도 못했고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허울뿐인 국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는 지역사회 청소년 종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 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해바라기 아동센터, 위기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관의 종사자들의 일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에 대해 잘 모르거나 두려워 피하거나 오히려 2차 가해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지원은 여러 가지 업무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사회는 이 발랑 까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어떠한 인식의 전환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에 '대상' 청소년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기관의 체계와 지원 시스템은 종합적이거나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기관 중에 참으로 허술한 구조로 국가의 책임을 면피해 온 것이 바로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입니다. 중앙을 비롯하여 전국 11개 지역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교육센터는 13년 동안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대상청소년 40시간 수강명령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위에 열거한 기관에서 연계한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의료, 법률, 심리, 부모상담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재계약하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정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부의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체계 의지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위청은 상담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하지만 실무자 2명이 피해아동청소년을 만나 라포를 형성하고 성장캠프를 통해 법률, 의료 지원, 생활지원을 해왔습니다. 2017년 한해 상담건수는 11,164건, 사례관리인원은 1,471명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1명이 모든 것을 다하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를 만드는 이름뿐인 구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국가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이라는 이름의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아동법을 개정하여 '피해'에 대한 지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리이며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협약에 근거한 당연한 일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대상청소년을 '교육' 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바꾸면 대책이 무엇이나고 공대위에 묻습니다. 이 물음에 답해야 하는 것은 공대위가 아니라 법무부를 비롯한 국가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아동법개정 이후의 지원체계와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장단기적 성착취 아동·청소년피해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눈감아온 정부가 지금 당장해야 할 일입니다. 스톨미투에서 볼 수 있었던듯이 더 이상 여성아동청소년들은 무력한 존재가 아니며 가장 강력한 시민적 주체임을 법무부를 비롯한 국가는 인식해야 합니다.

출처: 세계일보 (<http://segye.com/newsView/20180126001438>)

법무부 "청소년, 성매매 대상→피해자 개정 검토"

입력 : 2018-01-26 10:52:20 수정 : 2018-01-26 10:52:20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등의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박상기 법무장관(왼쪽) 등과 함께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소년 성매매범죄의 경우 해당 청소년을 성매매의 '대상자'로 보고 있는 현행 법규를 고쳐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청소년 성매매, 아동학대 등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 성매매(채팅앱)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성매매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性)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먼저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간주하진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현재 범죄피해자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의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젠더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예산을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도 “성평등과 관련해 양성평등위원회 중심으로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타 부처와 협력하고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성의 성평등과 지위 향상, 권익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여가부가 주무부처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기 바란다”고 여가부에 주문했다. 아동학대 예산에 대해 이 총리는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좋은 것인지 실용적 기준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법무부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법무부와 여가부 등 7개 부처가 동시에 참여해 다양한 내용으로 토론과 질의가 이뤄졌다. 특히 민간인 참석자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날카로운 지적과 제안을 했다. 이 총리와 각 부처 기관장은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뒤 서로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민간·국회·정부가 협력해 보고된 내용들을 강력히 추진하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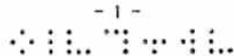
결 정

제 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김삼화의원, 남인순의원이 각 2017. 2. 13., 2016. 8. 8.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유

I. 의견표명의 배경

최근 인터넷의 대중화와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신체적, 정신적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인격형성을 저해하며,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적 불안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이와 관련하여 남인순의원, 김삼화의원이 각 2016. 8. 8., 2017. 2. 13.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478, 의안번호 2005598)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두 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대상아동”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 삭제, 전문적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이 아동·청소년 및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통합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전해(2011. 10.)』를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III. 판단

1.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및 보호처분 규정 삭제 필요 여부

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국제인권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 6. 9. 전부개정된 것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성매매 청소년들도 윤락여성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규율의 주안점이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겨가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1헌가1 결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에 관하여, 제34조는 당사국의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13은 성적학대와 착취를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달 등에 의한 아동의 성적 착취 근절을 위하여 유엔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및 보호처분의 성격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관계의 해체, 사회안전망의 미흡 등으로 인한 물질·인적 자원의 부재에 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당수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해체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가정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기본적 의식주 해결의 곤란과 경제적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되고, 정서적 안정감과 보호받아야 하는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여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에 있어 성인은 나이, 육체적 힘, 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우위에 있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쉽게 악용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 가.항과 같은 취지 아래 제26조 제1항에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이들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그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소년의 보호와 구제에 있다. 그러나 위 보호처분이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소년법」 제53조가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규율 위반한 보호소년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보호처분이 사실상 ‘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보호처분 결정이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되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후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 소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규율의 주안점을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두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것에 있음에도, 위 현행 법률은 여전히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피해자가 아니라 선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사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 법률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처벌'로 인식되고 작용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하고, 이를 악용하는 성구매자와 알선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본인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 하여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문 지원센터 신설 필요 여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9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들은 대부분 성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단체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교우관계 및 학업문제, 가정해체, 빈곤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성인에 비해 보다 쉽게 성매매에 유입되기 쉽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문제는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가족, 주거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바,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고 및 접수, 주거, 교육·상담, 의료, 법률, 자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원화된 창구와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7. 6. 15.

위원장 이성호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경 상 환

- 7 -





위 원 궤 해 리 최 해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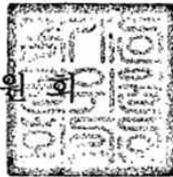




위 정보입니다.

2017. 7. 25.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박 미 숙

